



농산을 새롭게
시민을 행복하게

의안번호

제216호

**논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23. 11. 15.

논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16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11. 15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

1. 개정이유

- 「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」 일부개정되었으며, 개정안에 맞춰 새마을장학금 정원을 변경하고 자격요건 및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
-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와 자구를 수정하였음

2. 주요내용

-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목적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(안 제1조)
- 장학생 추천 및 선발 권한을 실제 권한에 맞게 재정비(안 제4조, 안 제5조)
- 장학금을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되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사항

- 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감사실-11365호(2023.10.24.)]
- 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복지정책과-31004호(2023.10.16.)]
- 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 [예산실-11896호(2023.10.12.)]

4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3. 10. 11. ~ 2023. 11. 1. (21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새마을공동체과(041-635-3474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논산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유공장학금, 우등장학금 및 특기장학금”을 “유공자 장학금,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”으로 한다.

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새마을 지도자”를 “새마을지도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유공장학생”을 “유공자 장학생”으로 하며, 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읍·면·동장은 관할”을 “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논산시새마을지회장이”로, “매 학년마다 논산시장”을 “논산시장”으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읍·면·동장”을 “논산시새마을지회장”으로, “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논산시지회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 한다.

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장학생의 정원) 장학생은 연간 시 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.

제7조(장학금액)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8조 제1항 본문 중 “개시”를 “시작”으로, “학교장을 통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보호자에게”를 “시장이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까닭이”를 각각 “사유가”로 한다.

제9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읍·면·동장”을 “논산시새마을지회장”으로, “까닭이”를 “사유가”로 한다.

5.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

제11조 중 “예산의 범위안에서 도전입금과 시비로 확보한다”를 “확보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	관	부	서	성	명				
입	자	치	행	정	과	장	김	일	규
안	새	마을	자치	팀	장	황	준	용	
자	담	당	자	유	하	정	(746-5243)		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논산시 새마을 남·여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</u>으로 인하여 <u>고등학교,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</u>에게 지급하는 <u>논산시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새마을장학금의 종류) 새마을장학금(이하 “<u>장학금</u>”이라 한다)의 종류는 <u>유공장학금, 우등장학금 및 특기장학금</u>으로 구분한다.</p> <p>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<u>새마을 지도자(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</u>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유공자에 한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않는다.</u></p> <p>1. <u>유공장학생</u>은 새마을사업에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논산시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새마을장학금의 종류) --- ----- ----- <u>유공자 장학금,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</u>----- ---</p> <p>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 ----- ----- -- <u>새마을지도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<u>유공자 장학생</u>-----</p>

특별히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·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

2. 3. (생략)

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.

제4조(추천) 읍·면·동장은 관할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및 부녀협의회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녀를 매 학년마다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추천 한다.

제5조(선발) 시장은 읍·면·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논산시지회장의 의

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 한다.

제4조(추천)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논산시새마을지회장이 -----

----- 논산시장 -----

-----.

제5조(선발) ----- 논산시새마을지회장 -----
----- 다음 -----

건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확정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6조(장학생의 정원) ① 장학생은 연간 시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이내로 한다.

②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, 선발대상자가 없는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다.

제7조(장학금액)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, 대학생은 매년 논산시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장학금의 지급)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보호자에게 지급한다. 다만, 특별한 까닭이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.

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장학생의 정원) 장학생은 연간 시 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.

제7조(장학금액)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8조(장학금의 지급) ① -----
----- 시작 -----
----- 시장이 -----
----- 사유가 -----
-----.

② -----

까닭이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
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
다.

제9조(지급의 정지) ① 장학생으
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까닭이
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
정지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
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
력이 생긴 때

3. 4. (생략)

<신설>

② 읍·면·동장은 제1항의 규
정에 의한 지급정지 까닭이 발
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
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장학금의 확보) 시장은 매
년 장학금 지급 소요예산을 예
산의 범위안에서 도전입금과 시
비로 확보한다.

사유가 -----

--.

제9조(지급의 정지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3. 4. (현행과 같음)

5.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
에 사용한 때

② 논산시새마을지회장-----
----- 사유가 ---
-----.

제11조(장학금의 확보) -----
----- 확
보하여야 한다.

1.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조문

- 제7조(장학금액)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비용 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비용추계 기간 : 2024년 ~ 2028년(5년간)
-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등에게 새마을장학금 지급

나. 추계 결과

- 세출 비용 : 450,000천원(90,000천원 × 5년)

구 분	산 출 기 초	금액(천원)
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	45명 × 2,000천원 = 90,000천원	90,000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30%, 시비 70%

3. 작성자

자치행정과장 김 일 규

〈연도별 비용추계표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세 입		90,000	90,000	90,000	90,000	90,000	450,000
도 비		27,000	27,000	27,000	27,000	27,000	135,000
시 비		63,000	63,000	63,000	63,000	63,000	315,000
세 출		90,000	90,000	90,000	90,000	90,000	450,000
장학금및학자금		90,000	90,000	90,000	90,000	90,000	450,000
재원 조달		90,000	90,000	90,000	90,000	90,000	450,000
의존 재원	소 계	27,000	27,000	27,000	27,000	27,000	135,000
	보조금	27,000	27,000	27,000	27,000	27,000	135,000
	지방교부세	-	-	-	-	-	-
자체 수입	소 계	63,000	63,000	63,000	63,000	63,000	315,000
	지방세	63,000	63,000	63,000	63,000	63,000	315,000
	세외수입	-	-	-	-	-	-
지방채		-	-	-	-	-	-
기 금		-	-	-	-	-	-
공기업 특별회계		-	-	-	-	-	-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-	-	-	-	-	-

참고 1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**□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**

제7조(장학금)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다만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
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.